

의안번호	제 28 호
의결연월일	

의결사항

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발의자	성재윤의원외 4인
발의연월일	2004. 7. 8

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2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04. 7. 8

발 의 자 : 성재윤의원의외 4인

1. 제안이유

- 사천시청 사업소 신설 및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(안 제3조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총 무 위원회	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 소, 종합사회복지관, 환경 시설사업소 , 문화예술회관	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 소, 종합사회복지관, 문화 예술회관, 행정타운사업소
산업건설 위원회	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 기술센터	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 기술센터, 하수도사업소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
- 사천시사업소업무처리규정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제2호중 “환경시설사업소”를 삭제하고, “문화예술회관” 다음에 “행정타운사업소”를 삽입한다.

제3조 제2항제3호중 “농업기술센터” 다음에 “하수도사업소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<u>종합사회복지관, 환경시설사업소, 문화예술회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국, 보건소, <u>농업기술센터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<u>종합사회복지관, 문화예술회관, 행정타운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국, 보건소, <u>농업기술센터, 하수도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

관계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50조 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 이 경우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91·12·31>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<개정 1991·12·31

제51조 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20조의2 (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 법 제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, 그 설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 <개정 1994.7.6, 1995.7.1, 1999.12.31>

[본조신설 1992.2.15]